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686

발의연월일: 2025. 6. 10.

발 의 자:김정재·최수진·엄태영

권영진 · 김승수 · 강명구

정점식 · 김대식 · 이인선

한지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있음. 또한, 중재 업무는 사안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수행하도록 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중 재부 구성 시 소비자 또는 제작자가 선호하는 특정 위원이 장기간 반 복적으로 선정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위원회 소관 사무의 특성상 위원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될 수밖에 없는데, 현행법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무설을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비밀의 누설금지를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촉 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 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영업기밀 누설에 대한 우려 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8제2항, 제47조의13 신설 등).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8제2항 중 "연임할"을 "2차에 한하여 연임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47조의1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장의2에 제47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13(비밀누설 금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제25호의2부터 제25호의6까지를 각각 제25호의3부터 제25호의7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제47조의1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위원회 위원 중 2회 이상 연임 중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 남은 임기

가 종료될 때까지는 제47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	제47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②
되, <u>연임할</u> 수 있다.	<u>2</u> 차에 한하여 연임할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	③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	
되지 아니한다.	
1. · 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1의3. 제47조의13에 따른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47조의13(비밀누설 금지) 자동
	<u>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u>
	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
	<u>여서는 아니 된다.</u>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81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25. (생 략) <신 설>

<u>25의2.</u> ~ <u>25의6.</u> (생 략)

26. ~ 28. (생략)

-----.

1. ~ 25. (현행과 같음)
25의2. 제47조의1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한 자

25의3. ~ 25의7. (현행 제25호 의2부터 제25호의6까지와 같 음)

26. ~ 28. (현행과 같음)